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홍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449

발의연월일: 2021. 9. 6.

발 의 자 : 김홍걸・양정숙・이병훈

박상혁 · 양기대 · 오영환

문진석 · 김영호 · 고용진

김경만 · 신정훈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 밖 청소 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·홍보·연구·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함.

그러나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가정 밖 청소년의 가출 및 가정에의 복귀가 어려운 주된 사유가 가정 내 폭력 및 학대임. 따라서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뿐 아니라 가정해체·학대·폭력·방임 등 불가피 한 사유로 가정과 사회에 복귀하기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 원 강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임.

이에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연구·조사,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다양한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교육·홍보 등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함(안 제16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7973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 중 "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·홍보 ·연구·조사 등"을 "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연구·조사, 제31조 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교육·홍보 등 가정 밖 청소년의 발 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17973호 청소년복지	법률 제17973호 청소년복지
지원법 일부개정법률	지원법 일부개정법률
제16조(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	제16조(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
지원)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	지원) ①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<u>가정 밖</u>	<u>가정 밖</u>
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	청소년 지원에 대한 연구·조사 <u>,</u>
한 교육・홍보・연구・조사 등	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
각종 정책을 수립・시행하여야	에 대한 교육・홍보 등 가정 밖
한다.	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
	위하여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